

태국 여행자 통관정보(규정)

□ 국가명 : 태국

2014.11월 현재

휴대품	통관규정 및 기준	비고
술	○ 1리터	
담배	○ 200개피, 엽연초의 경우에는 250g까지	
향수	○ 향수에 대해 특별히 면세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물품과 동일한 기준 적용	
면세한도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인당 태국화 10,000baht(한화 35만원 상당)이며, 별도의 품목별 수량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음. ○ 휴대품으로 상용에 공하여지지 않는 물건으로 특별히 제한을 받거나 금지품목 등이 아닌 경우, 태국화 80,000baht까지 현장에서 현금으로 세금 납부후 통관 가능 ○ 자동차 · 오토바이 및 관련부품 등은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됨. ※ 태국 역시 면세적용을 위한 기본조건은 개인 또는 직업상 용품으로서, 수량이 합리적인 범위이고, 금지 또는 제한품목이 아니어야 함. 	
외국환 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화 20,000불 상당 이상의 외화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는 세관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음. ○ 또한, 태국 바트화는 50,000baht를 초과하여 반출할 경우 태국중앙은행의 허가를 요하며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음. ※ 인접국인 라오스, 미얀마, 캄보디아, 베트남, 말레이시아로 여행하는 경우는 500,000baht 까지 휴대 반출 가능 	
의약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적으로 30일치 이내이고 개인용으로 인정되면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 면제 ○ 화장품은 품목 Type당 6개까지 요건구비 면제 	

휴대품	통관규정 및 기준	비고
식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적으로 30일치 이내이고 개인용으로 인정되면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 면제 ※ 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태국 FDA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. 	
반출입 제한품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반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풍속저해 물품/서적/그림, 음란물 - 태국국기 및 국기 디자인이 포함된 물품 - 마약류 (예: 대마, 아편, 코카인, 몰핀, 헤로인 등) - 위조 화폐/채권/동전 - 저작권 침해물품(예:음악테이프, CD, DVD, 컴퓨터 SW 등), 위조상품 등 ○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약품, 식품 및 보조제품, 화장품 - 골동품/미술품 등 예술품 - 총포/무기/폭발물 - 보호 야생 동식물(예: 원숭이, 파충류, 난초 등) - 기타 상무부장관 등이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품목 (예: 통신장비 및 위키토키, 중고자동차 및 부품, 전기톱 및 부품, LPG, 폐 디젤유, 폐 플라스틱, 유기화합물, 칼라복사기, 음각인쇄기, 금속동전, 대리석, 농산물(마늘, 대두 등) 등) ○ 반출이 제한되는 물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멸종위기 보호 동식물, 저작권 침해물품, 위조상품, 골동품/미술품 등 예술품 - 기타 상무부장관 등이 허가를 요구하는 품목 	

휴대품	통관규정 및 기준	비고
부가세 환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외여행자는 다음이 경우 태국내 지정면세점 (VAT REFUND FOR TOURISTS)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세(7%)를 환급받을 수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태국에서 180일 이내 거주하는 외국인 - 항공기 승무원은 제외 - 구입일부터 60일내에 반출 -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○ 환급을 위해서는 공항 체크인 전 세관확인을 위해 다음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권 - 부가세 환급신청서 - 영수증 원본 - 당해 물품 ○ 여행자는 세관 확인 후, 항공기 탑승 전에 부가세 환급센터에 들러 동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환급 	
기타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태국 입국 시 여행자는 여행자신고서(Form No. 211)를 사전에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이때 과세,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'Nothing to Declare'란에 √ 표시한 후 Green 채널을 통해 통과하며, 과세,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면세 여부가 확실치 않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는 'Goods to Declare'란에 표시 하고 Red 채널로 이동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관원의 안내를 받음. ○ 만약 과세,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을 휴대하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관구역 통과하다가 적발되는 사람은 세금포함 당해 물품가액의 4배 이내의 벌금(형사처벌도 가능)과 별도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, 동 물품은 압수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칙적으로는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고의성 유무에 관계없이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밀수죄를 적용하고 있으며, 현장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함 	

휴대품	통관규정 및 기준	비고
기타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가액의 1배, 은닉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~4배의 벌금을 부과함 * 특히 담배의 경우 태국 소비세청(국세청)이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 바, 면세범위 초과한 담배를 세관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세관구역을 통과한 후 소비세청 단속요원에게 적발되는 경우 특소세액(세율 85%) 납부 누락에 따라 휴대담배 1갑당 478.5바트(한화 약 1만8천원 상당)의 높은 벌금이 부과되며, 범칙물품은 압수됨 ○ 유치 시는 당해 여행자에게 유치증을 교부하고, 유치물품은 목록과 함께 수입담당부서에 인계되며, 이후 통관 시는 일반 수입물품 통관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게 됨. - 유치물품 세관보관기간은 최장 75일이며, 동기간 동안 통관/반송 등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, 세관에서 본인 통보 후 직권으로 공매처분 함. 	